

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30日(金) 午前11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住宅再開發事業關聯制度改善請願의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住宅再開發事業關聯制度改善請願의件(김남섭外21人 提出) 2面

(11時05分 開議)

1. 서울特別市城北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들겠습니다.

안건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委員會委員長 安傑瑯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건용의원입니다.

제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7년 5월1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위원회에 회부, '97년5월26일 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

1항 제3호 규정신설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2.5%로 인하여 주민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또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하여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에 대한 사용요율의 인하로 현행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81년 4월 30 이전 건물이 있는 경우는 25/1000를, '81년 4월 30 이후 건물이 있으면 50/1000을 차등적용하는 것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25/1000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을 5년 분할 연8%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 외의 지역, 기타 지역은 400㎡에서 700㎡로 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안건은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안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權赫驥議員 의석에서-결론 “다”에 보시면요, “일부 손질하게 된 것임” 이랬는데 손질이라는 용어가 조례안인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정이나 개정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에 맞게 일부 손질하게 된 것임” 이렇게 했는데 “손질”이 문구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을 행정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상입니다.)

네, 안결용 위원장님, 지금 권혁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안결용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문구가 거기 적합하나 적합하지 않으나 이것을 해명해 주면 됩니다.)

(「검토보고 내용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行政委員會委員長 安傑瑢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기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질의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된 내용중에 그런 해석상 착오는 있습니다마는 본 행정위원장으로서의 위원회 보고서 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자구수정 문제는 심사보고서, 여러 의원님들께 갈아드린 내용에 대한 착오내용은 우리가 적절히 우리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安敦洙議員 의석에서-그게 아니고요, 의장님)

한 분석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안돈수의원님.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여기에 보면요, 행정위원회에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구 자체가, 이것은 사무국에서 이것을 인쇄를 했는지 또 이 문구가 적합하나, 아니면 부적합하나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에 맞게 일부 손질하게 된 것임” 이것을 보면 “손질”이라는 말이 타당하나 안타당하나 이것만 해명이 되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안하셔도 됩니다. 수정이나 변경이나 이것을 해야죠.)

그러면 이 “손질”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이라는 용어로 쓰면 어떻습니까?

맞는 문구를 넣어서 문맥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住宅再開發事業關聯制度改善請願의件(金南燮外21人 提出)

(10時14分)

○議長 趙基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개발사업관련제도개선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겠습니다. 정창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地域開發委員會委員長 鄭昌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창만입니다.

주택개발사업 관련제도 개선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7년4월29일 고윤근의원의 소

개로 김남섭외21인이 제출하여 5월26일 제1차 지역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용적률 적용 및 산정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280 내지 300%로 유지하여 영세조합원이 입주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과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현실화 내지 자율화하여 조합원의 입주부담금 경감 및 재개발구역 내의 국공유지의 매입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불하대금 산정시 감정평가방법 개선, 불하대금 상환시 장기저리분할납부 요구, 세입자 임대주택의 서울시 매입가격을 현실화 하고 이주대책비의 국가부담 요망이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본 청원은 우리 구 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적인 민원사항으로써 본 청원의 내용이 우리 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행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서는 영세조합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에는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서 법령과 각종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하여 민원을 해소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정창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제도 개선 청원의 건을 지역개발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영기의원님이 어제부터 계속 신상발언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간곡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구청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청)

김영기의원님 나오십시오. 가급적 신상발언을 난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부터 신상발언을 강력히 요구해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鈴基議員 먼저 의장님 발언권을 주서서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지난 28일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몇가지 문제를 짚어서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본 윤리특위위원구성 문제에 대한 이용섭의원의 발언에서 특위위원에 올랐던 명단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두분이 있는데 자진해서 탈퇴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중 안돈수의원으로부터 두분은 명백히 누구라고 지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이어 나광수의원의 부언설명에서 96년말 의장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발과 명예훼손고발건을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권혁기의원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어 박경석의원은 그 두명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히고 그 두명의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명 발언을 얻어 지난 해 명예고발 사건은 공동 명의로 16명중 중암경찰서 관내라서 가까운 김영기의원이 나오셔서 대표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료의원을

들은 차원에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제척사유가 될까요? 본의원은 지난 일들의 수습과정에서 권혁기의원에게 본의원의 심적공사서류 일체 자료를 요구받았고 또 본의원이 60명생 듣지 못할 폭언까지 들었습니다. 그후 지금까지 권혁기의원과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런 일들의 피해자로서 제척사유가 될까요? 어떠한 의원은 김영기의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고발 2건을 들어 보면 의원이 아닌 누구라는 겁니까? 발언했던 이용섭의원은 본의 아니게 배경설명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에서 있었던 일ಿಗೆ 본의원 명예가 실추되었던 점을 이해하시고 본회의장에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동료의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趙基燦 김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의원님. 이용섭의원님의 성함을 거명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수영의원님.

○金壽榮議員 김수영의원입니다. 엇그제 일 때문에 또 신상발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제척사유라는 게 무슨 법률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고 구속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사건에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런 조사 내용에 관련된 분이 특정인 두분을 거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혁기의원님도 그러시고 김영기의원님도 그러시고 법률에 의해서 법적 제재나 구속력을 갖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김영기의원께서 지금 심수명의 대표자로서 조사대상이 되셔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섭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김영기의원님이 아닙니다. 제가 밝히지 않을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대표자로서 김수영을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영기의원님은 제척사유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김수영이 책임지겠습

니다. 김영기의원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섭의원님하고 저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김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의원님 양해되셨죠.

(○金鈴基議員 의석에서—그러면 17명 대표자니까)

(○權赫驥議員 의석에서—이것이 의회활동하는 것입니까? 그만 합시다.)

김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분명 김수영의원이 김영기의원님은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분명 선언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영기의원님의 뜻은 달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 문제를 종결하고 끝내겠습니다.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의장. 그런데 이 사항을 이용섭의원한테 들었으면 더욱 만족한데 이용섭의원이 아닌 김수영의원이 나와서,)

(○金壽榮議員 의석에서—당사자이기 때문에 애기한 것이예요.)

(○金鈴基議員 의석에서—이용섭의원이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을 때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용섭의원님이 아닌 3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議長 趙基燦 잠깐만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수영의원님이 이용섭의원님과 합의를 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金鈴基議員 의석에서—그것은 두분 관계가 아닙니까?)

(「됐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閉會)

○出席議員 39人

金 南 孝	鄭 昌 萬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安 傑 瑯	金 壽 榮	李 承 魯
趙 基 燦	羅 光 洙	柳 成 烈
崔 東 煥	李 鍊 炯	金 振 權

金 鈴 基 俞 鎮 武	辛 在 福 朴 時 俊	高 允 根 徐 榮 振	安 敦 洙 金 光 植	尹 晚 丸 吳 榮 作	宋 夏 星 金 順 權	朴 景 錫 任 泰 根	文 京 周 金 東 股
-------------	-------------	-------------	-------------	-------------	-------------	-------------	-------------

○缺席議員 3人

崔 桂 洛	金 甲 濟	崔 哲 模
-------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專 門 委 員	林 洛 吉

○參席公務員

副 區 廳 長	沈 長 錫
企 劃 室 長	金 煥 朱
總 務 局 長	金 相 國
財 務 局 長	鄭 顯 植
市 民 局 長	尹 守 鉉
都 市 管 理 局 長	朴 石 安
建 設 交 通 局 長	朴 東 洙
保 健 所 長	曹 宗 希
總 務 課 長	李 鍾 淳
財 務 課 長	元 在 雄
再 開 發 課 長	朴 昌 植